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34

발의연월일: 2021. 4. 30.

발 의 자:이종성・박대수・김형동

임이자·김승수·윤한홍

김태호 · 김영식 · 김예지

윤두현·김기현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비용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며,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 하려는 경우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인권"을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	
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	
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u>인권</u> 등에 대한 교육을 <u>실시할</u>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u>수 있다</u> .	<u>실시하여야 한다</u>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	
을 신청할 수 있다. <u><후단 신</u>	
<u>설></u>	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u>하여야 한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